

배선기구 제조업체 협의회 회의자료

- ◆ 일 시 : 2020. 3. 30.(월), 11:00~
- ◆ 장 소 : 한국제품안전협회 회의실

KPSA 한국제품안전협회
Korea Products Safety Association
(배선기구제조업체협의회)

社團法人 大韓電氣協會
KOREA ELECTRIC ASSOCIATION

우 05718 서울시 송파구 중대로 113 / 전화 02-2223-3694, 043-714-3791 / FAX 02-2223-3719
기술기준처 처장 이주철 팀장 신성수 담당자 과장 김웅성(kys1360@kea.kr)

문서번호 : 전협(준)제2020-20386호

기안일자 : 2020. 01. 28

시행일자 : 2020. 01.

수신 : 한국제품안전협회장

참조 : 최유준 담당자

선 결			지 시
	접 수	일자 시간 번호	
결 재 · 공 람	처리과		
	담당자		

제 목 : 『전기설비기술기준 개정 검토 요청』에 대한 회신의 건

1. 한국제품안전협회 제안-55(2019. 8. 1) 관련입니다.

2. 귀 협회에서 요청한 전기설비기술기준 개정에 관한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회신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검토안건 : 차단기 부착방법 및 전력량계 설치 위치 규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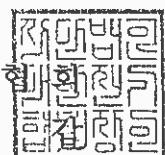
나. 검토결과 : 별입 1 참고

3. 상기 내용과 관련하여 전기설비기술기준 제·개정을 요청하고자 할 경우, 별입 2의 의견서를 제출하시면 절차에 따라 심의가 진행됨을 알려드립니다.

불임 : 1. 차단기 및 전력량계 관련 검토 내용 1부.

2. 제·개정 제출의견서 1부. 끝.

사단법인 대한전기
회장 김종



협회 문서접수처 : (이메일) kea@kea.kr, (팩스) 02) 2223-3629,
(우편) 서울 송파구 중대로 113 전기회관 대한전기협회장

차단기 및 전력량계 관련 검토

1. 요청내용

가. 차단기 부착방향 의무화 검토

- 분전반 내 차단기 역방향 부착에 따라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으므로 차단기의 부착방향을 상향으로 의무화 필요

나. 전력량계 설치위치 의무화 검토

- 전력량계 고장 시 변전실에서 해당 차단기를 정확히 OFF시킨 후 점검 해야 하므로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으므로 전력량계 설치 위치를 차단기 후단(가정용 분전반)에 설치하도록 의무화 필요

2. 검토내용

가. 차단기 부착방향 의무화

- 분전반 내 차단기를 역방향으로 부착하는 것은 의도하지 않은 투입, 오조작 등에 의한 위험의 우려가 있다고 사료됨. 다만, 분전반 내 차단기 부착방향 상향 의무화 시 부스바 증가 또는 케이블 사용에 따라 분전반 사이즈 확대가 예상되어 비용적인 측면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이해 관계자의 의견수렴이 필요함.

나. 전력량계 설치위치 의무화

- 일반적으로 전력량계는 검침, 보수 및 조사(검사)가 쉬운 노출장소에 설치하고 있음. 아파트의 경우, 시설 위치는 출입구 측면, 건물내벽 전면, 도로변 건물외벽으로 권장함.

※ 내선규정 1450-6 수급계기 등 설치 참고

- 전력량계는 건물의 유형에 따라 설치위치가 다양하고, 전력량계 설치 위치 및 전기설비 시설형태에 따라 고장 시 다른 분기 영향, 한전설비 영향 등 우려되는 사고 형태 등을 고려하여 한전이나 전기안전관리자 등 관련 업무 종사자의 의견수렴이 필요함.



한국제품안전협회

수신자 대한전기협회장

(참 조) 이진식 과장

제 목 한국전기설비규정 개정(안) 제출

1. 제안-55(2019.8.1)호 및 전협(준)제2020-20386(2020.1.28)호와 관련입니다.

2. 위와 관련하여 차단기 부착방법 및 전력량계 설치 방법을 불임과 같이 다시 검토하여 의견서를 송부하오니 한국전기설비규정에 반영 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불임 1. 한국전기설비규정(212.6.7)개정 의견서 1부
2. 한국전기설비규정(232.23)개정 의견서 1부. 끝.

한국제품안전협회


담당 송민진 과장 신동인 상무 임동기 부회장 정연태

첨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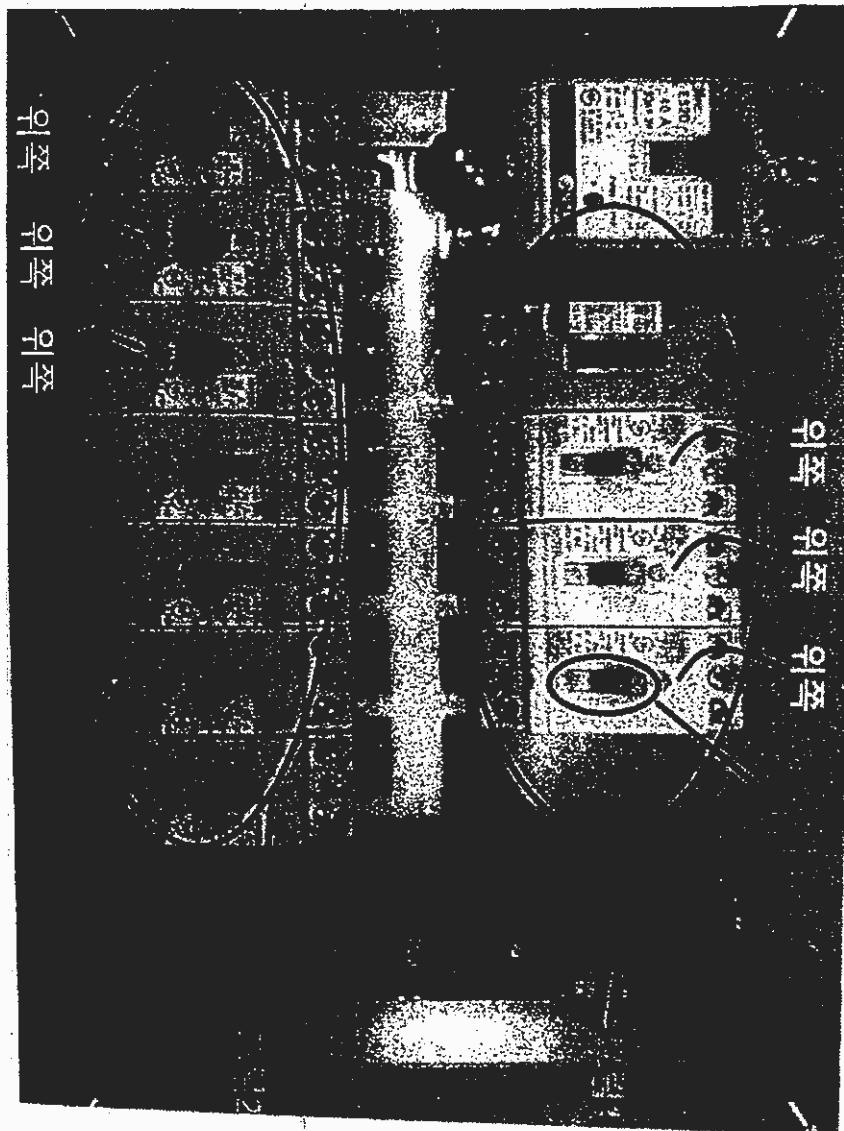
시행 안전 - 제 16 호 (2020. 2. 13.)

접수

우 08389 서울 구로구 디지털로 30길 28, 310호(구로동, 마리오타워) / <http://www.ksafety.kr>
전화 02-890-8300 팩스 02-890-8309(6999) / mj@ksafety.kr

1. 한국전기설비규정(212.6.3) 개정 제출의견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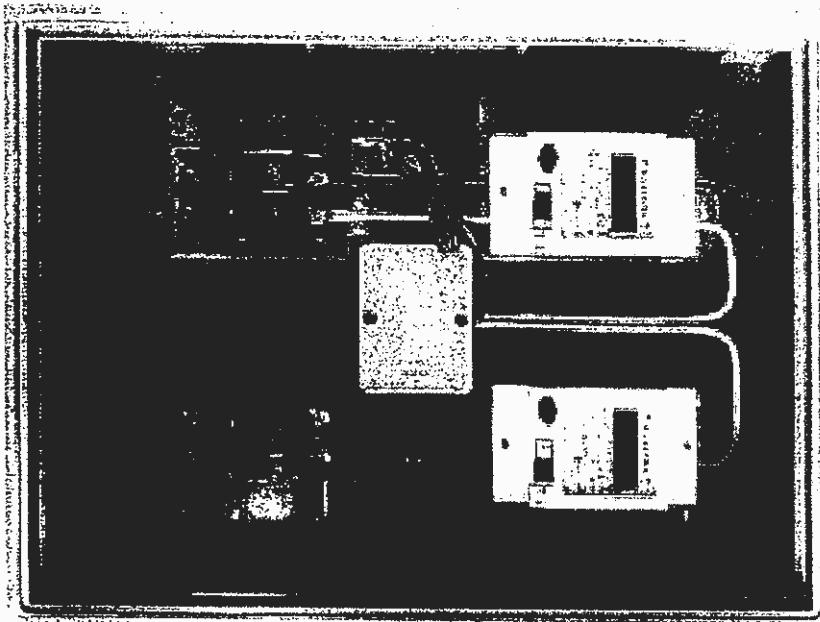
잘못 부착된 차단기 형태



2. 한국전기설비규정(232.23) 개정 제출의견서

현지 전기계량기의 계기함 설치(예)

* 아파트의 계단 등에 시설된 계기함의 배선용 차단기는 계량기의 출력측(2자)에 설치되어 있음



KS인증제품(콘센트) 민원관련 전문가 회의

□ 회의배경

- 콘센트 관련 반복민원 제기에 따라 민원인과 시험기관이 참여하는 전문가회의 개최

□ 회의개요

- 일시/장소: 2020.2.00. 00
- 참석자: 민원인(000), KTR(0000), KTC(000), KTL(000), 한국안전관리원(000), 담당 주무과(000) 등 10명

□ 주요내용

- (민원인 주장)

주요주장

- ① 전기용품안전기준 10-3항 감전사고방지장치인 셔터에 핀도 들어가면 안된다.
- ② 10-5항에는 이를 측정하기 위해 1 mm 강선을 콘센트의 셔터장치의 가장취약한 부분에 접촉을 시켜 1 N의 힘으로 한방향당 5초씩 세방향 15초를 견뎌야 한다.

⇒ KTR에서 동 내용을 이상하게 해석 1 mm 강선이 콘센트 구멍과 감전사고방지장치에 들어가는 것은 문제가 없다라고 했음. KTR에서 표준을 잘 못 해석 해 시험했다고 주장

검토결과

- 해당문구 없음

- 첨부 시험기관 의견

- 전문가 회의를 통한 민원인 의문해소

- KS C 8305(배선용 끗음 접속기) 표준 개정 및 시험성적서 표준예시 마련을 위한 논의

참고

시험기관 검토의견

업체주장	<p>① 전기용품 안전기준에 따라 10-5항 1 mm 의 강선이 1N의 힘으로 틈새에 들어가면 안 된다. 주장 ⇒ 강선이 들어가는 것이 부적합</p> <p>② 전기통신제품안전과에서도 강선이 들어가는 것이 부적합이라고 했음</p> <p>③ KTC인증팀에서도 강선이 들어가는 것 자체가 부적합이라고 했음</p>
KTR의견	<p>① KC 60884-1의 10.5항에 따르면 “셔터 장착 콘센트는 플러그가 꽂히지 않은 상태에서는 충전부가 그림 9와 10에서 나타내는 게이지에 접촉하지 못하는 구조이어야 한다.”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0V이상 50V이하의 전기 표시기는 해당 부분과의 접속을 보여주기 위하여 사용된다.</p> <p>적합성 여부는 검사로 실시되며 플러그가 완전히 빠진 콘센트의 경우에는 위에서 언급된 게이지를 아래와 같이 적용한다.</p> <p>즉 처음 밑줄 친 부분과 같이 셔터 구멍에 삽입이 되어도 전기 표시기로 인해 전기가 통하지 않으면 감전으로 보지 않는 것이 맞다고 판단됩니다.</p> <p>삽입의 유무로 판단이 아니라 전기표시기로 접속의 유무를 판단하는 것입니다.</p> <p>또한 아래의 내용을 살펴보면 그림 9 게이지는 20 N, 그림 10 게이지는 1 N으로 5초간 눌러서 확인하며, 게이지를 회전시키거나 다른 방향으로 움직일 때 힘이 가해지거나 빼서도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p> <p>KTR 내원하여 민원인의 주장은 핀이 삽입이 되면 부적합이며, 삽입 후 움직이면 더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데 앞서 말한것과 같이 삽입만으로는 부적합이 아니며, 전기가 통해야만 부적합으로 보는 것입니다. 또한 게이지를 회전시키거나 다른 방향으로 움직일 때 힘을 가하면 안되므로 주장이 어긋난다고 판단됩니다.</p>
담당주무과 의견	<p>② 안전기준에 나와 있는 시험방법에 대해 설명</p>
KTC의견	<p>③ 안전기준 KC 60884-1 10.5항의 요구사항은 게이지가 충전부와 접촉되어서는 안된다. 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p> <p>관련 IEC 60884-1 표준 원문에서도 The gauges shall be applied to the entry holes corresponding to the live contacts only and shall not touch live parts.로, 삽입 내용이 아닌 충전부와의 접촉을 금하고 있음을 명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p> <p>만약 민원인이 주장하고 있는 삽입 여부 자체가 올바른 요구사항이라고 가정한다면, 해당 시험은 게이지와 함께 (40~50) V 전압의 별도 지시기로 접촉 여부를 파악하라는 기준 상 내용은 애초부터 불필요한 내용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p> <p><u>민원인의 기준 해석은 다소 과도한 주장인 것으로 판단됩니다.</u></p>